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wk 한다.

뇌혈관질환②

고혈압증 악화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누1780판결
- 대법관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 12. 27. 선고, 90구1809판결
- 참조조문 산재법 제3조
- 참조판례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1991. 11. 8. 선고, 91누2727 판결

판결요지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G중독증세로서 LP가스의 흡입이 유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과로 또는 그 과로 및 기초 질병인 고혈압증이 장시간에 걸친 LP가스의 흡입과 공동원인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 및 LP가스의 흡입이 기초 질병인 고혈압증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두통, 현훈, 전신무력감 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소외 대원택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운전기사로서 소외 회사의 부산 1바 6886호 영업용 택시를 교대로 운전해 오던 원고들이 1989. 11. 심한 두통, 현훈, 전

뇌혈관질환③

뇌간마비 사망

- 대법원 제1부, 1995. 3. 14. 판결 94누7935 파기환송
- 대법관 정귀호,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5. 19. 93구12000판결

- 참조조문 : 가, 나,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1항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참조판례 : 나. 대법원 1992. 4. 14 91누10015판결 1993. 10. 12 93누9408판결

판시사항

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의 인정 범위
 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다.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이유

원심은 1985. 6. 24 부터 소외 대도통상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원고의 남편인 망 이기윤이 1992년 5월

말 벌점초과에 따른 49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같은 해 6. 1부터 쉬다가 같은 달 9일 도로교통안전협회 서울시 지부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겼으나 그 다음 날 11:30경 직접사인 뇌간마비, 선행사인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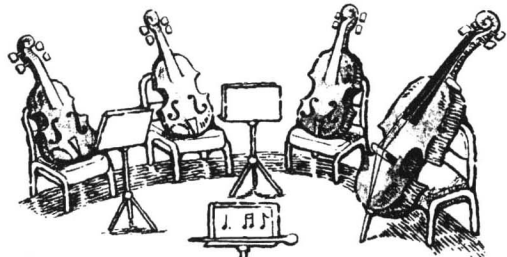
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과는 관련이 없고 또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

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 판단 받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밥알이 사발에 담겨져 있으면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한알한알 밥상에 뒹굴고 있으면 티가 됩니다.

책장에는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아름답게 보이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 있어야 제격입니다.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습니다.

밥알은 사발에, 신은 신발장에, 연필은 연필통 속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은 책상대로, 의자는 의자대로 바른 위치를 지킬 때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종이 한 장, 사무집기 하나라도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정위치 운동을 실천합시다.